

의안 번호	2541	[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1. 19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1. 19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2. 2.(월)

2.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체계로 확장하고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 등록, 심사 및 정비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규제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변경
- 나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호)
- 다. 규제의 등록, 규제사무의 공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라. 규제의 심사 등, 규제영향분석,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제7조)
- 마.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, 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, 규제 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11조)
- 바. 규제개혁위원회 설치, 존속기한, 기능,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~제15조)
- 사. 위원회 운영, 회의, 규제신고센터 설치,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~제19조)

아.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(안 제20조)

4. 근거법규
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

5. 검토사항

(1) 제정배경

- 위원회 설치·운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규제개혁 전반의 관리 체계로 확장하고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(2) 내용검토

가. 조례명 변경

- (현행) 「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(변경) 「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」

나. 조례 목적 및 정의, 규제의 등록 및 규제사무 공표(안 제1조~제4조)

- 목적 및 정의 명시
- 규제사무의 등록 의무 명시, 절차 내용은 규칙으로 규정함 명시
- 규제사무 누리집 게시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

다. 규제의 심사 등, 규제영향분석, 의견 수렴(안 제5조~ 제7조)

-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·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‘중요 규제’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사항을 규정함.
-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규정함을 명시
-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주민 의견 수렴 근거 마련(공청회, 입법예고 등)

라.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, 규제의 재검토 및 기한 명시, 규제 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(안 제8조~제11조)

-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5년

으로 명시

- 규제 재검토시 상위법에 따라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의무 실시
-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해당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근거 마련 및 요청 처리 절차 등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함을 명시

마.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12조~제19조)

- 기존 「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내용 삽입
- 위원회의 설치, 존속기한, 구성, 운영, 회의, 규제신고센터 설치, 수당 등의 내용 명시

바. 포상금(안 제20조)

- 규제개선 업무에 모범적 성과 창출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 근거 마련

6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제3항¹⁾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,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는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상위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운영 기준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.
- 현행 「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, 규제 등록과 영향분석 등 행정규제 전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조례가 필요한 실정이며,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마련을 병행하여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임.
- 본 조례안 개정 시행으로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, 우리 구의 통합적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(적용범위)

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 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큰 거 법 규

행정규제기본법

제3조(적용범위)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 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